

대전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합107712 판결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C

**변론 종결** 2023. 5. 17.

**판결 선고** 2023. 6. 14.

##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353,905원 및 그중 208,545,599원에 대하여 2021. 3. 5.부터 2021. 10. 6.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신용보증의뢰인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인이다.
- 3)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 나.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아래 표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            |               |              |                                |
|------------|---------------|--------------|--------------------------------|
| 개별거래-개별보증용 | 2016. 11. 10. | 255,000,000원 | 2016. 11. 10.부터 2017. 11. 9.까지 |
|------------|---------------|--------------|--------------------------------|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금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보증료등 납부)

- ③ 본인이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 제10조(상환범위)

①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신보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 다. 신용보증서의 발급 및 대출 실행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은행 서산금융센터지점(이하 'D은행'이라 한다)에 아래 표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               |   |              |              |              |
|---------------|---|--------------|--------------|--------------|
| 2016. 11. 10. | E | 255,000,000원 | 2017. 11. 9. | 300,000,000원 |
|---------------|---|--------------|--------------|--------------|

#### 라. 신용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 1) 2020. 4. 1. 피고 회사의 국세체납으로 최초 신용사고가 발생하였고, 2020. 10. 6. 피고 회사의 국세 미납부로 최종적으로 신용보증사고로 처리된 후, 원고가 2021. 3. 5. D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8,545,5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2)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은 대위변제일인 2021. 3. 5.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 3)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후 상환받지 못한 법적절차 비용(대지급금)은 4,406,036원이다.
- 4) 피고 회사, 피고 B이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미수위약금은 1,402,270원이다.

#### **마. 피고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및 경매 진행 결과**

- 1) 피고 C는 2020. 10. 15. B과 채권최고액 32,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다음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20. 10. 16. 접수 제19659호로 채권최고액 3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22. 10. 27.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금액 중 6,012,977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3)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를 진술한 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가단57683호).

#### **바.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고 B의 적극재산은 총 1,391,447,000원<sup>2)</sup> 인 반면, 소극재산은 총 3,039,298,290원<sup>3)</sup> 으로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2,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마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 채무의 이행으로서 214,353,905원(대위변제금 208,545,599원 + 대지급금 4,406,036원 + 미수위약금 1,402,27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208,545,59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3.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최종 송달일인 2021. 10. 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                                  |                    |                               |               |                            |
|----------------------------------|--------------------|-------------------------------|---------------|----------------------------|
| 1                                | 신용보증기금             | 원고의 사전구상금                     | 206,550,000   |                            |
| 2                                | P조합                | 예산군 G 토지<br>부동산담보대출의 채무인수     | 140,000,000   |                            |
| 30,000,000                       |                    |                               |               |                            |
| 3                                | 서산세무서              | 2020년 법인세 중간예납<br>예정고지 등      | 89,592,370    | 2020. 10. 8.까지<br>성립한 조세채권 |
| 4                                | 분당세무서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 13,023,450    |                            |
| 5                                | 국민건강보험공단<br>서산태안지사 | 채납보험료                         | 632,470       |                            |
| 6                                | Q                  | 대여금                           | 100,000,000   |                            |
| 7                                | 중소기업은행             | A의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br>연대보증채무금     | 1,023,000,000 |                            |
| 8                                | P조합                | 대여금                           | 25,000,000    |                            |
| S의 R에 대한 채무<br>물상보증채무<br>(채권최고액) | 19,500,000         |                               |               |                            |
| 10                               | C                  | 공사대금 근저당권<br>채권최고액            | 32,000,000    |                            |
| 11                               | T조합                | 서산시 U 토지, 건물<br>부동산담보대출의 채무인수 | 250,000,000   |                            |
| 12                               | P조합                | 부동산담보대출금                      | 100,000,000   |                            |
| 13                               | V조합                | 부동산담보대출금                      | 350,000,000   |                            |
| 14                               | W                  | 대여금                           | 260,000,000   |                            |
| 15                               | X                  | 200,000,000                   |               |                            |
| 16                               | R                  | 200,000,000                   |               |                            |
| 합계                               | 3,039,298,290      |                               |               |                            |

## 1) 원고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과 피고 C의 각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연대보증인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 2) 피고 C

피고 C는 2020. 6. 중순경 피고 회사로부터 수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 나. 판단

### 1)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 사해의사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8, 9,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6. 11. 1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2020. 4. 1. 피고 회사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2020. 10. 6. 최종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4호4)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해 사전구상금청구채권을 취득하였고, ②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무렵 피고 회사의 적극재산은 총 1,622,749,54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총 2,354,349,463원이고, 피고 B 역시 채무초과상태로 위 피고들이 변제자력이 없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원고가 채권자인 D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불과 5개월 내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를 하게 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위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 2)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마 제1 내지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C는 2020. 6. 24. 피고 회사와 Z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수장공사를 공사대금 31,2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시공완료일 2020. 7. 15.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인 2020. 7. 14.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31,273,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③ 피고 C가 피고 회사, 피고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21. 9. 16.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시점 이전에 이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 B은 채무초과의 상태였던 점, ② 피고 C는 공사 완료 후 3개월이나 공사대금을 계속 지급받지 못 하였다가 공사계약 당사자인 피고 회사가 아닌 그 대표이사였던 피고 B과 2020. 10. 15.에서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들이 있었고, 서산세무서장이 B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압류등기를 마치는 등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의 변제자력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악의의 수익자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C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재판장판사강길연

판사허인성

판사서제석

별지

1) 보증기한이 2020. 11. 6.까지로 연장되었다.

2) 피고 B의 적극재산 (2020. 10. 15. 기준)

|   |          |             |  |
|---|----------|-------------|--|
| 1 | 예산군 G 토지 | 285,480,000 |  |
| 2 | 태안군 H 토지 | 104,940,000 |  |
| 3 | 서산시 I 토지 | 152,409,000 |  |

|    |               |             |  |
|----|---------------|-------------|--|
| 1  | 예산군 G 토지      | 285,480,000 |  |
| 4  | 서산시 J 토지      | 156,312,000 |  |
| 5  | 서산시 K 토지      | 330,600,000 |  |
| 6  | 서산시 L 토지      | 88,970,000  |  |
| 7  | 서산시 M 토지      | 127,020,000 |  |
| 8  | 서산시 N 토지      | 18,696,000  |  |
| 9  | 서산시 O 토지      | 127,020,000 |  |
| 합계 | 1,391,447,000 |             |  |

### 3) 피고 B의 소극재산 (2020. 10. 15. 기준)

|                                  |                    |                               |               |                            |
|----------------------------------|--------------------|-------------------------------|---------------|----------------------------|
| 1                                | 신용보증기금             | 원고의 사전구상금                     | 206,550,000   |                            |
| 2                                | P조합                | 예산군 G 토지<br>부동산담보대출의 채무인수     | 140,000,000   |                            |
| 30,000,000                       |                    |                               |               |                            |
| 3                                | 서산세무서              | 2020년 법인세 중간예납<br>예정고지 등      | 89,592,370    | 2020. 10. 8.까지<br>성립한 조세채권 |
| 4                                | 분당세무서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 13,023,450    |                            |
| 5                                | 국민건강보험공단<br>서산태안지사 | 체납보험료                         | 632,470       |                            |
| 6                                | Q                  | 대여금                           | 100,000,000   |                            |
| 7                                | 중소기업은행             | A의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br>연대보증채무금     | 1,023,000,000 |                            |
| 8                                | P조합                | 대여금                           | 25,000,000    |                            |
| S의 R에 대한 채무<br>물상보증채무<br>(채권최고액) | 19,500,000         |                               |               |                            |
| 10                               | C                  | 공사대금 근저당권<br>채권최고액            | 32,000,000    |                            |
| 11                               | T조합                | 서산시 U 토지, 건물<br>부동산담보대출의 채무인수 | 250,000,000   |                            |
| 12                               | P조합                | 부동산담보대출금                      | 100,000,000   |                            |
| 13                               | V조합                | 부동산담보대출금                      | 350,000,000   |                            |
| 14                               | W                  | 대여금                           | 260,000,000   |                            |
| 15                               | X                  | 200,000,000                   |               |                            |
| 16                               | R                  | 200,000,000                   |               |                            |
| 합계                               | 3,039,298,290      |                               |               |                            |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보가 사전구상을 행사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신보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에게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4. Y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